

제342회 임시회
2015. 9. 11.(금)

심 사 보 고 서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9. 11.(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윤은희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 2015년 8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9월 2일

-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은희 의원)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단 설립의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 마련(안 제5조)
- 재단 임원 정수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함(안 제6조)
-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함(안 제7조)
-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 등)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단준립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안 제1조),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 재단 임원 정수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하며(안 제6조),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하고(안 제7조),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안 제12조, 제1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 등)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
----------	-----

발의연월일 : 2015년 8월 24일

발 의 자 : 윤은희, 임희무, 엄재창
김영주, 연철흙, 최광옥,
이양섭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 설립의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 마련(안 제5조)
- 재단 임원 정수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함(안 제6조)

-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함(안 제7조)
-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제1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였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북문화재단” 을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민법」 제3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 을 “「민법」 제32조” 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임면” 을 “임면(任免)” 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 을 각각 “문화·예술·관광 진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 중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로 하고, “정관으로” 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정관으로”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사무국” 을 “사무처” 로, 같은 조 제2항 중 “겸임토
록” 을 “겸임하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중 “운영” 을 “재단의 운영” 으로 한다.

제10조 중 “충북문화재단” 을 “재단” 으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한다.

제11조 중 “정부” 를 “충청북도” 로 한다.

제12조 중 “2개월” 을 “1개월” 로,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를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로,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를
“때에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2월말” 을 “3월말” 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민에게
공개한다” 를 “공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허위” 를 “거짓” 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u>충북문화재단</u> 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u>「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충북문화재단</u> 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u>충북문화재단</u> 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생 략)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u>충북문화재단</u> 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이사·감사의 <u>임면</u>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 11. (생 략)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이사·감사의 <u>임면(任免)</u>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 11.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 (생 략) 1. ~ 2. (생 략) 3. <u>문화예술진흥</u> 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사업 4. ~ 5. (생 략) 6. <u>문화예술진흥</u> 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신설) 7.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문화예술관광진흥</u> 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사업 4. ~ 5. (현행과 같음) 6. <u>문화예술관광진흥</u> 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7. <u>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u> 사업 8.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p>제6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u>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u>,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u>정관으로</u> 정한다.</p>	<p>제6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u>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u>,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u>준용하여 정관으로</u> 정한다.</p>
<p>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u>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u>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u>겸임토록</u> 할 수 있다.</p>	<p>제7조(사무처의 설치) ① <u>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u>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u>겸임하게</u> 할 수 있다.</p>
<p>제9조(출연금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u>운영에</u>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출연금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u>재단의 운영에</u>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u>충북문화재단</u>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u>얻어야</u> 한다.</p>	<p>제10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u>재단</u>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u>받아야</u> 한다.</p>
<p>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u>정부의</u> 회계연도를 따른다.</p>	<p>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u>충청북도의</u> 회계연도를 따른다.</p>

<p>제12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u>2개월</u>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u>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제12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u>1개월</u> 전까지 도지사에게 <u>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u> 하며, 이를 변경할 <u>때에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13조(결산서 제출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u>2월말</u>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u>도민에게 공개한다.</u></p>	<p>제13조(결산서 제출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u>3월말</u>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u>공개하여야 한다.</u></p>
<p>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u>허위보고</u>를 하였을 때 3. (생략) 	<p>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u>거짓보고</u>를 하였을 때 3. (현행과 같음)
<p>제16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u>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u> 것은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정관을 따른다.</p>	<p>제16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u>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u>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정관을 따른다.</p>

관련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